



2010 LPGA 투어 보도기관 자격 증명서 조건과 규약

LPGA 투어 보도기관 자격증명서 (“ 자격증명서 ”)를 부여받은 각 개인 또는 보도기관, 그리고 그 고용주, 당사자, 대행인, 계열회사, 자회사 또는 양수인(“ 보도기관 구성원 ”)들은 다음 자격증명서 조건과 규약(“ 조건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격; 권한 부여; 취소

자격증명서를 사용하는 각 보도기관 구성원들은 그들이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 뉴스 또는 사진 서비스를 위한 특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리랜서는 반드시 특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LPGA에 임무 배정의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LPGA에 의해 발행된 각 자격증명서는 자격증명서에 의거하여 수집된 특정 정보(동영상, 오디오, 사진 등등)를 보도기관 구성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LPGA는 그 단독 재량으로 자격증명서를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또는 통보(www.LPGAMediaCredentials.com에 게재된 즉시 효력을 발생함)을 한 후 이 조건들을 변경할 수 있다. 자격증명서는 양도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취소될 수도 있다.

보도기관 독점권; 뉴스 보도

LPGA는 모든 LPGA 토너먼트의 보도 독점권 (방송, 케이블, 오디오, 가정용 동영상, 인터넷, 또는 현재 알려진 또는 지금부터 고안된 기타 기록, 유형(有形)의 표현, 기사,기술(記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나 그에 한하지 않음)을 보유한다. LPGA 토너먼트 현장에서 확보한 기사, 기술(記述), 초상, 사진, 동영상, 오디오, 복제품 또는 기타 정보는 뉴스 보도를 위한 목적외에는 그 사용을 **엄격히 금한다**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보도기관의 구성원은 위에 설명된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a) LPGA의 사전 서면 동의서가 있거나 ; 또는
- (b) 보도기관 구성원이 다양한 기타 뉴스 기관에 재배포를 위해, 다른 뉴스 기관에 뉴스 정보를 배포하는 사업을 하는 확립된 전송 및 뉴스 서비스를 대표하는 경우.

보도 독점권 보유자로서 그리고 자격증명서에 의해 부여된 이용권한의 교환조건으로 LPGA는;

- (a) 자격증명서와 관련하여 보도기관 구성원에 의해 촬영된 모든 공표된 사진의 인쇄물을 제 3자에게 제공된 최선의 재정적 조건으로 구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 (b) 보도기관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보도기관의 구성원으로부터, 공표된 사진을 전세계에 LPGA 의 비 상업적 장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영구적, 비 배타적 인가서를 추가 비용없이 입수한다.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인가서는 단지 LPGA 만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제 3자에게 연장되지 않는다;
- (c) 토너먼트에서 또는 토너먼트가 있는 주(週)(예를 들어, 월요일 - 일요일, 또는 일요일보다 늦은 경우 토너먼트가 끝나는 날)동안에 촬영된 모든 오디오 또는 동영상 장면(골프 행위 또는 기타 장면)의 사본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해당 오디오/동영상이 전자적으로 이용가능할 경우, 보도기관의 구성원은 요청을 받으면 추가 비용없이 그것을 LPGA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낸다. 만일 해당 오디오/동영상이 전자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을 경우, LPGA는 모든 당해 요청에 대하여 산업 표준 복사 및 전송 비용을 지불한다.

보도기관 구성원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LPGA는 보도기관 구성원에 의해 공표된 사진의 복제품을 배포하거나 당해 복제된 사진에 허가증을 부여하거나 인가를 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소유권

LPGA는 상표, 저작권, 그리고 기타 소유권을 포함하나 그에 한하지 않는 그의 모든 지적 재산권의 배타적인 소유주이다. 그러나, 각 자격 증명서는 보도기관 구성원들이 LPGA와 그 토너먼트의 뉴스 보도에서 LPGA 의 상표를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LPGA로부터 별개의 인가서를 입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기관 구성원은 뉴스가 아닌 내용,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당 상표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다. 자격 증명서의 사용이 보도기관 구성원에게 토너먼트 상표 및/또는 기타 제 3자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보도기관 구성원은 어떻게 명명되었던지와 상관없이, 자격증명서와 관련되어 촬영된 모든 사진, 또는 확보된 기타 자료에 포함된, 제 3자의 소유 자료의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필요한 인가서, 동의 또는 면제서를 입수해야할 책임이 있다.

웹사이트; 경기 기록

온라인 토너먼트 방송(현재 알려진 또는 이후 고안된 동영상 연속방영, 디지털 영상, 실시간 오디오, 실황방송, 통계자료, 또는 기타 기록 또는 토너먼트의 설명을 포함하나 그에 한하지 않음)은 생방송, 실황 방송, 홀 바이 홀, 또는 실시간 중계여서는 안되며 또 그렇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경기기록과 통계 정보는 보도기관 구성원 웹사이트의 뉴스부분에만 단지 그 정규 골프 방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 (a) 그러한 정보가 LPGA.com에 발표되고 난 후;
- (b) 실제 촬영이 발생된 후 30분이 지나고 난 후 (특별한 경우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행사에 보고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또는
- (c) 그러한 정보가 법적으로 공표된 정보로 이용가능 해지고 난 후.

상기 제한 사항은 보도기관 구성원과 그 당사자, 대행인, 또는 고용인과의 사이에서의 내부 전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0 LPGA 투어 보도기관 자격증명서 조건과 규정 계속

동영상/ 오디오 및 기타 비 문자 내용

보도기관 구성원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보도기관 구성원은 뉴스 방송 목적을 위해서, LPGA 토너먼트 또는 관련된 행사에 관한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비-문자 내용(보기, 현재 알려진 또는 지금이후 고안된, 인쇄물이 아닌 어떠한 형태의 표현, 기술(記述), 묘사, 또는 기타 기사)을 전송, 발표하거나 또는 전송 또는 발표를 도울수 있다 :

- (a) 자격 증명서를 위한 요청서를 제출할 때, 보도기관 구성원은 자격증명서 신청서에 그의/그녀의, 그기관의 비-문자 내용의 전송 및 발표의 목적을 나타내어야 하고, 그러한 의도가 LPGA에 의해 사전 서면 통보를 통해 승인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b) 토너먼트 현장에서 포착되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발표된 모든 비-문자 기사는 그러한 기사가 포착된 후 48시간 이내에만 사용가능하며 그 길이는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 (c) LPGA의 사전 서면 동의서에서 명시되어 다르게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문자 내용의 사용은 LPGA와 또 다른 제 3자 사이의 보증 또는 후원인 관계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과 또는 그 내용을 통합하는 어떤 후원 또는 광고권을 갖지 않는다.
- (d) 온라인 비-문자 내용은 48시간 이상 기록이 보관되어서는 안되며, LPGA.com에서 찾을 수 있는 LPGA 웹사이트 조건과 규정에 의거하여 LPGA.com으로 돌아가는 링크가 수반되어야 한다;
- (e) 토너먼트가 행해지고 있는 국가에서 그 날의 텔레비전 생방송이 끝날 때까지 또는 당일의 공식 LPGA 행사 방송이 끝나기 전(" 금지 기간")까지는 그날의 경기의 어떠한 장면도 방송되어서는 안된다. 참고; 토너먼트가 행해지고 있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LPGA는 서면으로 금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 (f)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보고는 단지 정규 계획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그 외, 보도기관 구성원은 비-문자 기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 인정한다:

- (a) 비-문자 기사는 LPGA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매매되거나 면허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리고
- (b) 비-문자 기사는 어떠한 LPGA 토너먼트 또는 관련된 행사의 현장 전송 또는 녹화시차된 전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뉴스 방송을 위해 녹화된 하이라이트는 제외).

LPGA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비-문자 기사의 사용도 엄격히 금지된다 (계획된 사용이 뉴스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도).

비-문자 기사에 관한 인가서를 확보하거나 또는 인가서 비용에 관해 질문을 하기 원하시면 ' 텔레비전과 신흥 보도기관' 의 시니어 디렉터, Sandi Higgs 에게 Sandi.Higgs@lpga.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영상/초상의 이용

이 자격증명서를 사용하는 어떤 보도기관 구성원의 성명 또는 초상이 LPGA 토너먼트 및 기타 행사와 관련된 방송, 텔레비전 방송, 사진, 필름, 동영상 또는 기타 매체에 포함된 경우, 그 보도기관 구성원은 현재 알려져 있거나 또는 지금 이후 고안된 그러한 성명 및 초상을 전 세계에 걸친 모든 보도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 양도가능한, 영구적인 권리와 인가서를 LPGA에 부여한다.

위험의 추정/면제

보도기관의 구성원은 토너먼트 현장의 그라운드에서 있는 동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위험뿐만 아니라 골프 게임에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방향이 빛나간 골프공 또는 골프카트에 의해 맞거나 치이는것 그리고 골프코스 또는 주변 지역에 넘어지는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하지 않음), LPGA, 그 고용인, 구성원, 이사, 임원, 그 인가된 토너먼트와 주최 장소, 타이틀 스폰서, 참가하는 선수, 자원봉사자, 양수인, 그리고 그것의 모든 대행인(" 면제인")을 실제 경기 이전, 경기동안 또는 경기 이후, 또는 토너먼트 현장에 있는 동안 발생하는 부상, 또는 인적재산의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킨다.

면책

보도기관의 구성원은 보도기관 구성원의 이 자격증명서의 조건의 위반을 포함하나 그에 한하지 않는, 보도기관 구성원에 의해 행해진 또는 행하여졌다고 주장되는 모든 행위 또는 부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그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손해배상, 책임,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소송/중재 비용을 포함)으로부터 또 그에 반대하여 면제인을 공동으로 또 개별적으로 면제, 방어 그리고 면책한다. 보도기관 구성원을 배상자로서의 책임의 근원이 되게할 수도 있는 모든 청구에 관해, (a) LPGA는 보도기관 구성원에 의해 선정되고 LPGA에 의해 승인된 변호인과 함께, 보도기관 구성원의 단독 비용으로, 그러한 청구의 소송에 전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b) 그 동의없이 그러한 청구의 어떠한 화해에도 참여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법의 선택

이 합의서의 조건과 규정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 원리의 선택에 상관없이 뉴욕법이 적용된다.

법규에 대한 동의

자격증명서를 요청하는 각 보도기관 구성원은 반드시 이 법규에 동의해야 한다. LPGA 토너먼트에 접근을 원하는 모든 보도기관 구성원들은 보도기관 구성원과 그 편집책임자가 공동으로 서명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